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부산해양수도이전기관지원에
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단체와의 집적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199호, 2025.12.4. 공포, 2025.12.4. 시행)됨

동 법률에서 위임한 해양특화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때의 구체적인 기준과 해양특화지구의 지정요건·방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양특화지구 내 건축물 용적률 완화(안 제4조)

- 1)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정하는 해양특화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용도지역 내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2) 해양특화지구 내 용적률 완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로 구체화

나. 해양특화지구 지정 요건(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특화지구 지정 시,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전계획과 부합 여부, 부산광역시장의 수립한 이전지원계획과 부합 여부, 정주지원 시설 설치 적합성, 관련 기관·단체 집적 촉진 효과 등을 고려토록 규정

다. 해양특화지구 지정 절차(안 제6조)

해양특화지구 지정 시,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대국민 열람, 지구 지정 통지 등 구체적인 지정 절차를 규정

라. 해양특화지구 지정 해제(안 제7조)

해양특화지구 지정 해제가 가능한 경우와 지정 해제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6. 09. 16. ~ 10. 26.)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부산광역시는 해양특화지구 내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제5조(해양특화지구의 지정 요건)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해양특화지구로 지정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이전기업의 이전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전기관의 이전계획(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전계획을 포함한다)에 부합할 것
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이전지원계

획에 부합할 것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해양특화지구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할 것

4.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단체의 집적을 촉진하고 기능적 연계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

제6조(해양특화지구의 지정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부산광역시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종료되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 요건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정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해당 지구의 특성 및 지정 목적

3. 해당 지구의 주요 계획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지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동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양

수산부장관은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이를 부산광역시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해양특화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2. 해양특화지구의 총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7조(해양특화지구의 지정 해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특화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양특화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 등을 고려할 때 해양특화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특화지구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해양특화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특화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

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부산광역시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특화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해제 사유를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이를 부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부산광역시</u> <u>는 해양특화지구 내 용도 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u>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u><신 설></u>	<u>제5조(해양특화지구의 지정 요건)</u> <u>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해양특화지구로 지정한다.</u>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이전기업의 이전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전기관의 이전계획(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전계획을 포함

<신 설>

한다)에 부합할 것

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이
전지원계획에 부합할 것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해양특화지구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할 것

4.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단체의 집적을 촉진하고 기능적 연계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

제6조(해양특화지구의 지정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부산광역시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종료되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 요건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정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해당 지구의 특성 및 지정 목적

3. 해당 지구의 주요 계획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지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동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특화 지구를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이를 부산광역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해양특화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2. 해양특화지구의 총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7조(해양특화지구의 지정 해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특화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양특화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 등을 고려할 때 해양특화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특화지구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해양특화지구의 지
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
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특화지구의 지정을 해
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부산광역시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특화지구의 지정을 해
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해제
사유를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이를 부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51) 773 - 6601